

[서식 예]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

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

청 구 인 ○ 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, 휴대폰 번호 :

사건본인과의 관계

사건본인 ○ 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, 휴대폰 번호:

등록기준지(국적):

청 구 취 지

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○○○에게 매각함을 허가한 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



- 2. 위 심판에 의하면,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
- 3. 그런데,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 요성이 발생하였고,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 가 들어온 상태입니다.
- 4. 따라서,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) 각 1통

1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 1통

1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1통

1. 기타(소명자료)

2013 . O. O.

위 청구인 ㅇㅇㅇ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비 용	 · 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· 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 		
불복절차 및 기 간	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4일 이내 즉시항고(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)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, 법률,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(가사소송법 제43조제4항) 		
기 타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(라류사건은 가소법 제44조 각호에 관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질상 임의관할임.)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(지방법원, 지원)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.